

#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 가. 제출 : 2007. 8. 30(사천시장)
- 나. 회부 : 2007. 8. 30(산업건설위원회 회부 의안번호 제59호)
- 다. 상정 : 2007. 9. 17(제11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2. 제안설명 요지(기술지원과장 : 이관우)

### 가. 제안사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조례에 의거 피해농작물의 보상업무 추진 과정에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사천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 에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 국. 소장”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 국. 소장” 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과장” 으로 함(안 제6조제2항)
- 동위원회 간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부서장” 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 으로 함(안 제6조제5항)
- 지원금의 지급은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에서 “1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로 함(안 제9조제2항)

### 다. 관계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용어의 정의)
- 「농지법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영욱)

- 본 안건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에 의거 피해농작물의 보상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사천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 국. 소장” 으로 하고
  - 부위원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 국. 소장” 에서 “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 동위원회 간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동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 지원금의 지급은 “2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에서 “1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로 개정하여 피해 농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동 안건의 개정 내용을 요약하면
  - 지원금 지급범위 하향 조정과
  -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직위를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업무담당 국. 소장”으로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소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간사는 “담당과장”에서 “담당”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 동 조례의 “사천시 농작물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동 조례안 제6조제3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 위원장,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공무원으로 당연직하고 시의회의원 1명과 외부 인사 4명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내용으로
  - 동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공무원 조직 내부에 국한된 업무가 아닌 농작물 피해에 따른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고

-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는 것은 관련 업무 처리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 동 조례 제6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 금지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금지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고
- 동 조례안 제6조제5항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로 수정하여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소관 업무의 처리시 공정성과 형평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담당 과장께서는 동 조례안 작성시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한 예우를 고려하지 않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화 하게 된 경위와 특히, 업무담당 과장은 위원회 간사로서 위원회 운영에 역할을 다하도록 하지 않고 부위원장으로 당연직화 한 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동 조례안 제6조의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은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위원	질의내용	답변자	답변요지
최갑현	○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하여도 문제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조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 : 제3차생위원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

#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일자 : 2007. 9. 17

제안자 : 최인환의원 외 4인

## 1. 수정사유

- 사천시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되며,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외부 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주된 심의 내용이 공무원 내부 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농민에 대한 피해 지원금 업무임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면서 외부 위촉 위원의 예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과장”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안 제6조제2항)
- 간사는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 업무담당” 에서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급업무 담당과장”으로 함(안 제6조제5항)

#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 지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현행과 같음

⑦현행과 같음

## 현행·개정·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6조(위원회 설치·운영)</p> <p>①(생략)</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지업무담당국·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생략)</p> <p>④(생략)</p> <p>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금지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p> <p>⑥(생략)</p> <p>⑦(생략)</p>	<p>제6조(위원회 설치·운영)</p> <p>①(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지원금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p> <p>③(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p>⑤-----</p> <p>-----</p> <p>간사는-----</p> <p>-----</p> <p>업무담당으로 한다.</p> <p>⑥(현행과 같음)</p> <p>⑦(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회 설치·운영)</p> <p>①(개정안과 같음)</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p> <p>-----</p> <p>-----</p> <p>③(개정안과 같음)</p> <p>④(개정안과 같음)</p> <p>⑤-----</p> <p>-----</p> <p>간사는-----</p> <p>-----</p> <p><b>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b></p> <p>⑥(개정안과 같음)</p> <p>⑦(개정안과 같음)</p>